

▶ **자격규정 개정 건**

[시행일:2021년 1월 9일]

사단법인 한국가족상담협회 가족상담전문가, 한국부부상담학회 부부상담전문가, 한국내면아이상담학회 내면아 이상상담전문가 자격취득자는 (사)한국가족상담협회 자격규정 제18조 / 한국부부상담학회 자격규정 제16조 / 한국내면아이상담학회 자격규정 제16조의 개정된 다음의 조항에 의거 자격유지를 이행해야 한다.

[자격규정 제18조 2항(가족상담전문가 자격 유지) 개정의 건]

(현행) 연1회 이상 협회가 주관하는 상담사례발표회 또는 학술발표회에 참여한다.	(변경) 연1회 이상 협회가 주관하는 상담사례발표(학술발표회) 또는 연2회 이상 전국가족상담센터협회가 주관하는 상담사례발표에 참여한다.
--	---

※ 개정 사유: 회원의 자격유지 여건 확대 및 전문성 신장

[자격규정 제16조 2항(부부상담전문가 자격 유지) 개정의 건]

(현행) 연1회 이상 협회가 주관하는 상담사례발표회 또는 학술발표회에 참여한다.	(변경) 연1회 이상 협회가 주관하는 상담사례발표(학술발표회) 또는 연2회 이상 전국가족상담센터협회가 주관하는 상담사례발표에 참여한다.
--	---

※ 개정 사유: 회원의 자격유지 여건 확대 및 전문성 신장

[자격규정 제16조 2항(내면아이상담전문가 자격 유지) 개정의 건]

(현행) 연1회 이상 협회가 주관하는 상담사례발표회 또는 학술발표회에 참여한다.	(변경) 연1회 이상 협회가 주관하는 상담사례발표(학술발표회) 또는 연2회 이상 전국가족상담센터협회가 주관하는 상담사례발표에 참여한다.
--	---

※ 개정 사유: 회원의 자격유지 여건 확대 및 전문성 신장

▶ **상담 윤리강령 개정의 건**

[시행일:2021년 1월 9일]

상담사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화상상담에서 (사)한국가족상담협회 상담 윤리강령 제1장 내담자에 대한 책임과 제2장 비밀보호 관련 다음의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.

[상담 윤리강령 제1장: 내담자에 대한 책임에 대한 조항 추가의 건]

제14조 상담사는 비대면 화상상담을 실시하는 경우, 내담자의 사적인 공간과 타인이 공개되지 않도록, 사전에 보호조치 사항을 내담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얻어 전자서명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.
---

[상담 윤리강령 제2장: 비밀보호에 대한 조항 추가의 건]

제7조 상담사는 비대면 화상상담에 따른, 상담관련 문서(상담동의서, 초기면접지, 녹음 및 녹화 동의서)에 대한 전송, 보관, 폐기에 대해 협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내담자에게 사전에 문서 비밀보호 사항을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얻어 전자서명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.
--